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김장겸 · 박준태 · 이인선
조지연 · 김용태 · 이만희
김재섭 · 강명구 · 이상휘
김정재 · 최형두 · 서천호
박덕흠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,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. 또한,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·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·추락·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, 물리적 방호 교육·훈련·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

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).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원자력시설등에서의 드론 비행금지) 원자력사업자는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(이하 “드론”이라 한다)이 「항공안전법」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구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시설등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·퇴치·추락·포획하는 등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0조의3(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예외적 허용 등) ① 원자력사업자는 「전파법」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 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(이하 “전파차단장치”라 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·폐기에 관하여는 「전파법」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.

1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에 필요한 경우

2.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에 필요한 경우

3. 그 밖에 장비의 점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원자력시설등에서의 드론 비행금지) 원자력사업자는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(이하 “드론”이라 한다)이 「항공안전법」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제구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시설등에 접근하거나 침입하는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·퇴치·추락·포획하는 등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10조의3(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예외적 허용 등) ① 원자력사업자는 「전파법」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론을 대상으로 전파 이용을 방해 또는 차

단하는 장치(이하 “전파차단장치”라 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
이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
· 폐기에 관하여는 「전파법」
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.

1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
적방호 교육에 필요한 경우
2.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
적방호 훈련에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장비의 점검 등 총
리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
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
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
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
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에 신고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
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이
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
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
여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
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